

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9일  
발 의 자 : 신정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강대호, 김기대, 김기덕,  
김재형, 김정환, 김제리,  
박순규, 봉양순, 송명화,  
오현정, 이경선, 이광성,  
최웅식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와 동 조례 간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함.
- 나.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- 다.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.
- 라.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

나. 서울특별시의회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

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2. 그 밖의 용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시장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
2.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3.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5.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
6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
7.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

**제4조(보조금 등의 지급)**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,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)**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

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(이하 “자금”이라 한다)을 융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

2.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(기획관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

2.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

3.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(담당관)이 된다.

**제7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·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8조(교육·홍보)**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발적 협약의 체결)**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
2.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,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
3.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**제10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